



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

2016. 3. 15.

1. 문제점

- ‘인사모’를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명백히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음
-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회원들은 ① ‘인사모’의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(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누가 ‘인사모’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소극적 성향의 부류), ② ‘인사모’를 중심으로한 비정상적 연구회 활동이 연구회 안에서 연구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

2. 대응방안

- ‘인사모’의 자발적 해산 방안
 -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임 → 회장의 자진해산 권유과정에서 다수 일반회원이 인사모 활동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 있음
 - 운영위원회 결의, 총회 결의 등에 의한 폐지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현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
 - 행정처 차원의 인사모 폐지권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책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타당
 - ‘언론 활용을 통한 거리낌 증대로 말미암은 폐지’ 또는 ‘우리법연구회 후신 규정’ 방안은 역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지 않음
- 언론이 그 기회를 활용하여 ① ‘민사판례연구회’ vs ‘우리법연구회’

와 같은 이념성 논란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, ② 그 과정에서 이념성과 사실상 특별한 관련 없는 내부 연구회(예; ‘민사집행법연구회’ 등)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언론 framing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있음 → 법원과 법관 전체의 신뢰 추락 가능성

■ 연구회 정상화 방안

- 대다수 일반 회원은 순수한 학문적 관심과 ‘국제인권’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임
-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고, 특히 **36기 이하의 법관들은 이념적 편향성이 적고, ‘국제법’ 등에 대한 관심에 따라 연구회에 가입한 법관들이 많음**
- 다만, 대다수 법관들이 연구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정한 이념적 지향성이 있는 법관들이 연구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형국
- 따라서 ‘인사모’ 폐지 후 연구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
- 연구회의 회칙상 회장과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회장과 간사를 통한 연구회 정상화 시도가 가장 바람직함
- 현 회장 및 간사를 통하여 일반 회원의 우려, 행정처의 우려,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체가 부당하게 낙인찍힐 가능성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 해결 노력을 권유할 필요
- 현실적으로 연구회 활동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급 등의 방안은 연구회 운영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움
- 예산이 적게 배정되더라도 ‘인사모’ 등의 활동을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
- 내부적으로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공식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, 어차피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회원들 역시 ‘인사모’ 운영과 관련 있는 핵심 회원들이므로 별다른 호



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 있음

- 실제로 대다수 회원은 그러한 문제제기에 찬동할 것이나 평소 소극적 성향 때문에 ‘댓글’ 등을 통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임
- 반면에 그러한 문제제기에 핵심 회원들만 강력 반박하는 댓글을 달 가능성 高 → 현재 상황의 고착화 내지 악화 우려

■ 장기적 대응방안

-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더라도 동일·유사한 문제가 국제인권법연구회든, 그 밖의 연구회든 집행부나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시 발생할 수 있음
- 재판에 관련된 연구회도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쟁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언제든지 유사한 문제 발생을 상정할 수 있음
- 예컨대, ①국제거래법연구회에서 한미FTA 관련 이슈 등을 통하여 사법행정, 외교 영역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, ②형사법연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 관련 이슈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으며, ③젠더법연구회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제기 등을 할 수도 있음
- 문제의 핵심은 ‘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’에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회 임원진의 구성에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임
- 따라서 이 부분도 향후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함. 다만, 위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
- 최소한 법원행정처에서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필요 ⇨ 매년 활동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뒤 ‘승인’, ‘수정요구’ 등 회신
-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우려되나, 개인적인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‘법관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방안’에 관한 적절한 범위의 관리로서 국가예산을 지급하는 이상 심사권한을 보유함이



상당

-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,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<끝>